#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046 제출연월일: 2024. 10. 30.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로,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 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5 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날"로 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 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 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 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제406조 · 제407조 및 「신탁법」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제8조-있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 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 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다) 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제1조(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 4. (생 략)
-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u>2025년</u><u>1월 1일</u>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 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u>2024</u> <u>년 12월 31일</u>까지 효력을 가진 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u>2025년</u><u>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u><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u>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지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정수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정수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 기간) ----- <u>2024</u> 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지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 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다)

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 용례)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대금을 지 급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 용례)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 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 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제7조의6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